

-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조사 사례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

- 대전광역시 세정과 -

- 요약 -

I. 추진배경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대행업자들이 이중매매계약을 작성 제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으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후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 원칙과 조세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지방세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였던 분야에 대한 테마조사 일환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II. 현황 및 운영실태

- 대전광역시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은 2008.7.1 현재 77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차량 등록대수는 연평균 2.7%씩 증가되는 실정으로 취득·등록세 신고·납부처리 업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 우리시 자동차 등록세 부과현황 중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과 거래하여 납부한 실적이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납부할 시 법인장부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다른 지역은 요구하지 않는데 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만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매도자의 법인장부 사본을 매수자인 개인에게 요구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고·납부 당시 실거래가격 확인은 매매계약서로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또한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자동차 등록대행업자들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 생각한다.

III. 조사방법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이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1%)를 신고·납부 하였는지 여부 확인(매입·매출장 및 상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이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확인(매입·매출장 및 상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
-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의 장부에 매입·매출 사항이 기재된 차량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 명의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법인 중 (주)○○네트워크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지역 등 전국 13개 지역에 직영점을 갖고 있는데 업체관계자가 전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왜 대전광역시에 서만 문제 삼아 추정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에 대한 탈세 알선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6개 법인을 우선 선정 조사한 후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전체법인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 중에 있다.

IV. 추진실적

- 6개 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145건에 225백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하였으며, 조사대상 건수 대비 추징건수 비율이 20.7%를 차지하고 있다.

V. 기대효과

- 단순히 225백만원을 추징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법행위로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 나머지 71개 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약 1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방세정여건을 감안하면 다른 어느 때 보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본 론 -

I. 추진배경

우리시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구에서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등록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괄 신고받아 납부서를 발부한 후 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분을 정리하여 징수결정 하고 취득세는 관련자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에서 납부분을 징수결정 하는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민원이 폭주하여 취득·등록세를 신고하면 그에 따른 납부서를 발부하기에 급급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구도 담당자 1명이 다른 세목과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취득세 통보자료에 의거 자진신고·납부분을 징수 결정하고 사후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납부시 법인의 장부 사본을 제출받고 정기 법인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법인에서 매수자인 개인에게 법인의 장부 사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대부분 등록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등록하고, 등록대행업자는 등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이중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왔다.

그동안 발생건수가 많고 취득가액 규모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은 관리를 소홀히 하여왔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의 묵인 하에 등록대행업자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하는 위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세정의 실현에 반하는 것이며 지방세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였던 분야의 테마조사 일환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II. 현황 및 운영실태

1. 현황

가. 현행제도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 현황

대전광역시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은 2008.7.1 현재 <표1>과 같이 총 77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 법인들은 3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직원(딜러)들이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차량등록 및 취득·등록세 신고 대행은 중고자동차매매조합 소속 등록요원들과 행정사 소속 등록요원들이 대행하고 있다.

<표1>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 현황

(2008.7.1 현재)

(단위 : 개)

구 분	합 계	대전조합	오토월드조합	중부조합
법인 수	77	20	31	26

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현황

우리시의 차종별 등록대수는 <표2>와 같이 매년 증가 추세로 연평균 2.7%씩 증가 되었으며, 이는 일일 평균 40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 신고·납부처리 업무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2> 차종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합 계	승용차	승 합	화 물	특 수
2004년도	491,817	370,147	35,803	84,789	1,078
2005년도	506,961	387,264	32,822	85,760	1,115
2006년도	521,234	402,742	32,139	85,198	1,155
2007년도	535,697	417,475	32,197	84,839	1,186
2008.8.31 현재	538,484	422,047	31,820	83,423	1,194

2.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가. 신규자동차 과세표준액 적용

신규자동차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탁송료 포함, VAT 제외)를 제출받아 적용하며, 개인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나 법인의 경우는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다.

나. 중고자동차 과세표준액 적용

1) 개인간의 거래 시 과세표준액 적용

중고자동차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신고가액이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

2) 일반법인과의 거래 시 과세표준액 적용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당연히 법인장부를 첨부함으로 과세표준액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매도인이 법인이고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매도자인 법인에서 장부 사본을 매수자인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계약서를 제출받아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과 거래 시 과세표준액 적용

①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이 취득 시

법인장부 사본 또는 전표 사본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그중의 일부는 문방구에서 전표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게 매매계약 금액을 작성,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② 개인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 부터 차량 취득 시

대부분 등록대행업자에게 자동차 등록을 의뢰하며, 등록대행업자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자의 도장 또는 직접 서명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등록대행업자들은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 자동차 구입자에게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색을 내면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당연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다. 문제점

우리시 자동차 등록세 부과건수 중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과 거래하여 납부한 실적이 <표3>과 같이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납부할 시 법인장부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다른 지역은 요구하지 않는데 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만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매도자의 법인장부 사본을 매수자인 개인에게 요구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고·납부 당시 실거래가격 확인은 지난한 실정이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세 업무담당자가 계약서를 제출받아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납부서를 발급한 후, 수많은 등록세 자료를 사후관리 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신고서류 일체를 복사하여 각 자치구 자동차 취득세 담당자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하는데, 자치구의 담당자 또한 다른 업무와 같이 담당하고 있고 건수도 많으며 취득가액 규모도 작다 보니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개인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 생각한다.

〈표3〉 거래 유형별 자동차 등록세 부과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법인	일반법인	개인
합 계	626,952	215,642	29,831	381,479
2006	224,029	76,168	11,321	136,540
2007	241,746	89,126	12,027	140,593
2008.8.31 현재	161,177	50,348	6,483	104,346

※ 정액 등록세 포함

라. 문제점에 대한 대응 필요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Ⅲ.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선정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지방세무조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구별로 법인설립이 가장 오래된 6개 법인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수 조사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조사방법

가. 중점조사 사항

첫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이 법인장부상 가액(사실상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1%)를 신고·납부 하였는지 여부 확인

둘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이 법인장부상 가액(사실상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확인

셋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의 장부에 매입·매출 사항이 기재된 차량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 명의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을 중점조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나. 자료 확보 및 조사내용

1) 자료 확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부 사본을 시 본청에서 1개 법인, 각 자치구별로 1개 법인씩 배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법인에서 제출한 매입·매출장을 검토하였으나 매입·매출장에는 차량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지 않아 상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받아 과세내역서와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 하였다.

2) 조사내용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이 납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과 매입장(상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의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분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매수자의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액과 매출장(상사 이전 후 매매실적보고서)을 비교하여 그 차액분을 개인에게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법인의 매입·매출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으로 직접 이전 등록된 경우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게 80%의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조사대상 법인 중 (주)○○네트워크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지역 등 전국 13개 지역에 직영점을 갖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탈세 알선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의 허위 전표를 이용한 과소신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수많은 개인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의한 과소신고 등은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항임에도 그동안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후 관리에 소홀히 대처 하였다.

3. 민원발생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 세무조사결과 취득·등록세 추징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담당자, 자동차 취득·등록세 담당자는 납세자들이 직접방문, 전화, 인터넷, 심판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 많은 민원을 제기하며 조세저항을 하였는데, 사실상의 거래가격(법인장부가액)에 의해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추징함은 적법한 행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민원인을 설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민원제기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중고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취득·등록세 신고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즉시 추징하였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경감됨에도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2~3년이 지나 추징함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어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 3년이 경과하여 추징할 때에는 가산세 부담율이 52.85%(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32.85%)

둘째, 전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다른 지역은 추징하지 아니하는데 대전광역시에 서만 추징함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였고,

셋째, 개인간의 거래 시와 법인간의 거래 시 과세표준액을 다르게 적용함은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들 이었다.

금번 조사 추진으로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취득·등록세 사후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 신문보도 내용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중도일보** 7

‘탈세 알선’ SK엔카

**중고차 과세기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
대전소비자 771명 1억6049만원 추징위기**

중고차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엔카가 소비자들에게 탈세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SK엔카는 올해 초 세무조사를 받아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한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실거래가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대덕구청의 세무조사 결과 SK엔카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운데 모두 771명이 1억 6049



만원을 추징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딜러에게 수수료를 주고 차량등록을 위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을 등록할 때 딜러는 영업상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K엔카는 이 외에도 회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 1400여만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통상 차량구입가액의 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4억여원의 금액을 낮게 신고한 셈이다.

SK엔카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했고, 차량을 팔 때도 영업상 이익을 보기 위해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해 소비자들의 탈세를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 영업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딜러들도 대부분이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할 때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아끼수 있다는 영업전략으로 사용해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soseongsu@

직영점 13곳 전국피해 우려

차량 구입 땀 직접 실거래가 등록해야

중고차 매매업체인 SK엔카의 ‘소비자에 대한 탈세 알선’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SK엔카는 전국적으로 모두 13개의 직영점을 갖고 있으며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지역에서도 직영점을 통해서 상당수의 차량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에 사는 이모(30)씨는 “SK엔카가 소비자들에게 탈세를 알선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SK엔카 대전매세터에서 중고차를 구매

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지난 19일 서구청으로부터 추가로 등록 및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미 딜러에게 차량가격과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주고 현재까지 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할 때 딜러가 자동차 과세기준을 실거래가의 20% 정도로 신고해 나머지 차액(80%)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에서만 이같은 피해로 SK엔카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소

비자 가운데 771명이 자치단체로부터 1억6049만원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SK엔카의 전국 13개 직영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피해는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려면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고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SK엔카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과세기준을 낮게 신고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문제를 지적받은 후에는 100%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으며,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성수 기자

나. 홈페이지 전자 민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홈페이지 전자 민원 : (주)○○네트워드를 통해 3년 5개월 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냥 그러라고

했죠, 축소 신고한 것이지요. 하지만 3년 5개월(41개월)이 지난 후에 구청에서 법인조사를 하다 (주)○○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축소신고 차액분에 대해 가산세 20%에 일할계산된 금액을 추가 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에서 업무가 많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세법을 잘 몰랐던 책임에 20% 가산세 어찌 보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야지요. 하지만 일할계산되어 나온다는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왜 납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지요. 일찍 알았다면 냈을 세금을 신고할 때 정확히 몰라 법인을 통해 신고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그 기간을 전부 책임지라니요.

◆ 홈페이지 전자 민원 :(생략) 지금 중고자동차 과소신고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신고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알아본 결과 다른 지역을 이룰 문제 삼지 않는데 대전지역만 지금 과소 신고한 걸 다시 1~2년 뒤에 이걸 내라고 하는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자동차를 취득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실거래가액으로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고 등록 대행한 (주)○○자동차매매상사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등록이전 서류를 접수받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담당자도 책임이 있다.

◆ 심판청구 : (주)○○네트워크에서 작성한 서류에 의거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한 추징시 가산세 포함 부과·고지는 부당하다.

◆ 청와대 국민신문고 : 1년전 전국적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중고차 업체인 (주)○○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250만원(세금포함) 전부 지불했습니다. 중고매매상사 쪽에서 자동차 값을 230만원이 아닌 110만원 정도로 적게 신고를 하여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안내장 이었습니다. (주)○○네트워크에 연락을 해보니 이것이 관례라는 말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탈세가 관례가 될 수 있습니까 ?

IV. 추진실적

6개 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건수 대비 추징건수 비율이 20.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2,145건에 225백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단순하게 225백만원을 추징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세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1. 추징현황

〈표4〉 법인별 추징발생 현황

(단위 : 천/천원)

조사대상 법인	조사대상 건수	추징 건수	합 계	취득세	등록세
합 계	10,342	2,145	225,393	63,174	162,219
A법인	333	57	7,021	3,971	3,050
B법인	4,513	1,412	174,636	47,176	127,460
C법인	998	447	15,861	4,225	11,636
D법인	252	114	10,378	2,368	8,010
E법인	1,950	97	16,030	4,962	11,068
F법인	2,296	18	1,467	472	995

〈표5〉 사유별 추징발생 현황

(단위 : 천원)

조사대상 법인	합 계	매매상사법인 과 소 신 고	차량취득자 과 소 신 고	미등록 전매
합 계	225,393	21,916	203,009	468
A법인	7,021	2,527	4,494	0
B법인	174,636	13,670	160,498	468
C법인	15,861	3,011	12,850	0
D법인	10,378	2,708	7,670	0
E법인	16,030	0	16,030	0
F법인	1,467	0	1,467	0

2. 향후과제와 예상성과

가. 향후 과제

첫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할 경우는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지만,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하여 기 추징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게 성실신고·납부 당부, 적정신고·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계획 통보, 이중계약서 및 허위전표 제출에 대한 탈세행위 조장 시 조세범처벌법

에 의거 조치한다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안내 게시판 게시, 등록대행자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조기에 중고차에 대한 사실상가액의 신고·납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

셋째, 사후관리는 지방세법 제118조, 동법 시행령 85조 및 시행규칙 4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48호의2 서식 <표6>을 사용하여 중고차량 매각신고 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서 물건소재지 구청장에게 1개월 단위로 통보하고, 물건소재지 구청장은 매수자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통보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수시 확인하며,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를 조장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13조, 제14조에 의거 강력히 고발조치를 하여 공평과세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상 성과

나머지 71개 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약 15억원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소신고하면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할 수 있고, 납세자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탈세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으며, 전국으로 파급되어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납부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V. 기대효과

1.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

차량등록사업소나 자치구에서 자동차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법인에 대한 취득·등록세 신고·납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조세저항과 방대한 과세자료 때문에 사후관리 실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세 최후의 보루인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납세자의 고의든 착오든 과소신고·납부된 세액을 담당공무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3~4년이 경과되어 추징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의 가중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세정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는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금번 조사로 이중계약서 작성 제출 등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반드시 추적하여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 추징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2. 자주재원 확충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세회피의 기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탈루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사명감과 능력배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번 조사는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많은 양의 과세자료와 거센 조세저항으로 업무처리에 다소 힘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방세정여건을 감안하면 다른 어느 때 보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 자료가 건전한 지방세 납세풍토 조성 및 공평한 세무행정을 전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표6〉 매각재산 통보서식

[별지 제48호의2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매각재산 신고

구분	매 수 자			차량번호	차종	매각일	매각금액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발신명의 (인)